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 (찬성자 9명)

나. 의안번호 : 제 644 호

다. 발의일자 : 2019. 5. 21.

라. 회부일자 : 2019. 5. 24.

2. 제안이유

- 특별시도의 차도 노면표시 관리와 포장관리가 도시교통실과 안전총괄실로 이원화된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유지보수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바,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면표시 관리 업무는 도시교통실에서 안전총괄실로 이관하고, 안전총괄실에서 기 수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유지관리 업무를 명문화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안전총괄실장의 시설물유지관리 내역에 “서울특별시의 노면표시”를, 도로사업소장의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중 차도관리에 “버스전용차로”를 각각 추가함(별표 1).

4.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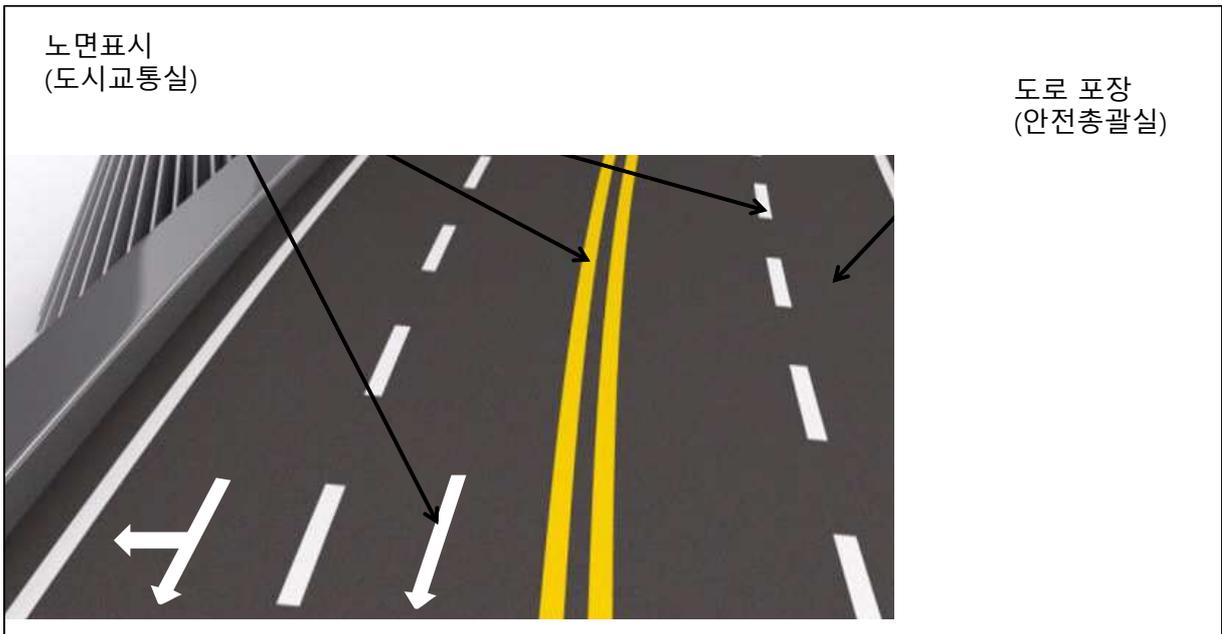
가. 관계법규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특별시도의 차도 노면표시 및 포장 관리가 도시교통실과 안전총괄실로 이원화되어있는 것을 안전총괄실(도로사업소)로 이관하여 일원화시키는 한편, 안전총괄실에서 기 수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유지관리 업무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임.



[표] 개정안 주요내용([별표 1])

구분	주요내용		관리자
	현행	개정안	
도로 및 도로시설물 - 서울특별시도	○차도관리(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차도관리(<u>버스전용차로</u> ,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사업소장
교통안전시설 - 신호기·안전표지	○자전거전용도로의 안전표지	○자전거전용도로의 안전표지 ○ <u>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시</u>	안전총괄실장

- 현행 서울시 도로 및 교통시설 관리체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차도,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의 도로안전시설은 안전총괄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이중 1종 시설물인 교량 및 고가차도 등을 제외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부속물,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 자치구, 서울시설공단 등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음.
- 또한, 도로 중 보도, 도로부속물 중 교통관리시설 및 교통안전시설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은 도시교통실에서 총괄하면서 사업시행은 안전총괄실(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자치구 등에 위임하고 있음.



[그림] 현행 서울시 도로 및 교통시설 관리체계

- 본 개정안의 골자인 현행 시도 노면표시의 경우,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에서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고 도로사업소가 이를 재배정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한편, 이와 별개로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에서도 노후포장 정비차원에서 도색 복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시도 노면표시 유지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임.
- 한편, 버스전용차로의 경우는 도시교통실이 신설하고 이후 차도관리를 안전총괄실(도로사업소)이 노후포장 정비예산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별표 1에 관리기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버스전용차로 차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개정안과 같이 별표 1의 ‘교통안전시설 중 신호기·안전표지’란에 안전총괄실장의 업무로 ‘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시’를 추가하여 향후 노면표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을 도시교통실이 아닌 안전총괄실이 직접 편성하고 집행토록 개선하는 한편,
- 별표 1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란에 서울특별시도 중 도로사업소장이 맡고 있는 차도관리 대상에 ‘버스전용차로’를 명문화함으로써, 신설은 도시교통실이 유지관리는 안전총괄실(도로사업소)이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